

February 22, 2016

2016. 2월 개정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개인과세 부분

2016. 2. 17.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2016. 2. 5.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을 개정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좌 동)

위 개정규정은 20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그 세율(20%)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9는 파생상품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5%로 인하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 대상: KOSPI200선물·옵션 등 -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시행시기: 2016. 1. 1 - 세율: 10%(탄력세율)	■ 탄력세율 인하 (좌 동) 세율: 5%(탄력세율)

위 개정규정은 2016. 2. 1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가업승계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업승계(상속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①, ②, ④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 가능)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 (예외)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 유류분 반환청구시 예외 인정	■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좌 동) - 60세 → 65세 ③ 공동 상속 허용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기업별 상속 허용(해당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중 1명 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④ 상속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④ (좌 동)
--	---------

위 개정규정은 2016. 2. 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금액 신설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적정이자* - 실제 차입이자 * 적정이자율: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8.5%) -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위 개정규정은 2016. 2. 5.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 이익의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5조의 4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기회의 제공방법, 수혜법인의 이익 및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 ■ 사업기회 제공의 방법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

〈신설〉	■ 수해법인의 이익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 ■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수해법인의 공제·감면액을 제외한 법인세 산출세액 × 수해법인의 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함
-------------	--

위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임종현 세무사	TEL. 02 316 4618	E-Mail. jhim@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
● 하병만 전문위원	TEL. 02 316 1689	E-Mail. bmha@shinkim.com